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 종 섭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원항공작전기지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임.

3. 주요내용

조치원비행장(G-505)의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지원항공작전기지
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자목을 삭제하고, 같은 표 제3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커. G-505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2]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(제6조 관련) 1. 전술항공작전기지 가.~ 너. (생략) 2. 지원항공작전기지 가.~ 아. (생략) <u>자. G-505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</u> 차.~ 타. (생략) 3. 헬기전용작전기지 가.~ 처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예비항공작전기지 가.~ 다. (생략)	[별표2]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(제6조 관련) 1. 전술항공작전기지 가.~ 너. (현행과 동일) 2. 지원항공작전기지 가.~ 아. (현행과 동일) <u>자. <삭제></u> 차.~ 타. (현행과 동일) 3. 헬기전용작전기지 가.~ 처. (현행과 동일) <u>커. G-505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</u> 4. 예비항공작전기지 가.~ 다. (현행과 동일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	
연 락 처	(02) 748 - 5844